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0. 14.(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6.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의결사항

가.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2019년도 3~4분기 (2020-55-244~250)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에 앞서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관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윤용현 재난방송관리팀장

-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19년도 3·4분기 내용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의 재난 방송 실시 의무를 위반한 8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5> 시정조치(안)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8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19년도 3·4분기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9년도 3·4 분기에 요청한 총 242건의 재난방송에 대해 방심위는 재난방송 의무위반 의심 건을 11개 방송사, 16건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를 재검토한 결과, 4개사 5건은 실시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9개사, 1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티비씨는 재난방송 실시사실을 소명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여 제외하고 최종 8개사, 10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재난방송 미실시 사업자 관련입니다.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KNN, (재)원음방송, (주)연합뉴스TV 등 3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의견입니다. (주)KNN은 2건의 재난통보문의 통보시간과 내용이 유사하여 동일 건으로 오인하였고, 대부분 전남지역이어서 당사 방송구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재난통보문을 송출하도록 개선하였다는 통보도 아울러 해 왔습니다. 다음은 (재)원음방송입니다. 담당자가 수신율이 낮은 일부 가청구역을 비가청구역으로 오인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담당자 문책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주)연합뉴스TV입니다. (주)연합뉴스TV는 17초 전 수신한 재난통보문과 동일한 건으로 오인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프로그램 중에만 자막 송출하였는데 이제 모든 방송에 즉시 송출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주)KNN, (재)원음방송, (주)연합뉴스TV 등 3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정보 누락한 사업자입니다. (주)KNN, (주)와이티엔라디오, 춘천문화방송(주), (재)CBS, (재)광주영어방송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청하였으나, (주)KNN은 재난 지역·명칭·발효시각을, (주)와이티엔라디오는 재난 지역·발효시각을, 춘천문화방송(주)는 재난지역을 각각 누락하였으며, (재)CBS와 (재)광주영어방송재단은 재난지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방송하는 등 중요사항을 요청받은 그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사업자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KNN의 경우에는 17초 전에 수신한 재난통보문과 동일한 건으로 오인하여 정확하게 자막방송은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특보 등의 형식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였다는 의견입니다. (주)와이티엔라디오의 경우에는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오류로 재난방송 요청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프로그램 중에 폭염경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주)와이티엔라디오는 재난방송 요청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방통위에 재난방송 클라이언트사는 해당일 온라인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춘천문화방송(주)과 (재)CBS입니다. 2개 방송사업자 모두 문자서비스가 오지 않아 요청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재난방송 요청은 온라인시스템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팩스로 통보되는데, 해당 건은 당시 재난정보의 문자수가 많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터링되어 문자서비스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춘천문화방송(주)의 경우에는 12시와 2시 뉴스 관련 프로그램의 기상정보 코너를 통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등에 관한 재난정보를 제공했으며, CBS의 경우에는 뉴스편집자가 담당자와 상의 없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수신한 43개 시·군 재난지역을 광역 단위로 방송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광주영어방송재단입니다. (재)광주영어방송재단의 경우에는 재난지역이 전라남도 5개시, 17개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주요 7개 시·군과 함께 “전라남도 대부분”으로 방송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성 여부 등 검토입니다. (주)KNN, (주)와이티엔라디오, 춘천문화방송(주), (재)CBS, (재)광주영어방송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을 실시하면서 재난지역을 누락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방송하는 등 중요사항을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정보를 오류한 사업자 관련입니다. (재)국제방송교류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을 실시하면서 재난발효시각을 잘못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의견은 영문번역 과정에서 실수로 호우경보 발효시각을 다르게 방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법성 여부 등 검토입니다. (재)국제방송교류재단이 특보발효 시각을 요청내용과 다르게 재난 방송을 실시한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 위반의 여지는 있으나 단순한 실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견청취 후 시정조치(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확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 정돈하여 주시고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피심인 관계자 입장)

○ 한상혁 위원장

- 지금부터 (주)KNN 등 5개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도 3~4분기에 방송사가 실시한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실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위반 의심행위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해 검토하고, 재난방송 전문가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KNN 등 7개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8월 28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소명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처분의 결정에 앞서, 처분 당사자인 (주)KNN, (주)연합뉴스TV, 춘천문화방송(주), (주)와이티엔라디오, (재)광주영어방송재단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KNN 편집부장이신 추종탁 님 나오셨습니까?

○ 추종탁 (주)KNN 보도국 편집부장

- 예, 나왔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주)연합뉴스TV 편성팀장이신 홍성준 님 나오셨습니까?

○ 홍성준 (주)연합뉴스TV 편성팀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춘천문화방송(주) 뉴미디어팀장이신 전영재 님 나오셨습니까?

○ 전영재 춘천문화방송(주) 뉴미디어 팀장

- 예, 나왔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주)와이티엔라디오 라디오센터장이신 임종열 님 나오셨습니까?

○ **임종열 (주)와이티엔라디오 센터장**

- 예, 나왔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이신 배승수 님 나오셨습니까?

○ **배승수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 사장**

- 예, 나왔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진술에 앞서 간단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진술을 위한 자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에 앞서 처분 당사자인 5개 방송사업자의 법 위반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듣고 향후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앉아계신 순으로 이번 과태료 부과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진술인들께서 3분 정도 발언하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추종탁 님부터 모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종탁 (주)KNN 보도국 편집부장**

- 저희는 부산·경남을 커버하고 있는 지역민영방송사인 KNN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난방송 문자가 오면 재난이 크면 기본적으로 방송사들이 뉴스 특보를 합니다. 특보가 재난의 현황을 알리고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특보를 하고 그것보다 수준이 낮으면 속보를 하고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이 하단에 자막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날 태풍이 올라온다는 예보를 듣고서 뉴스 특보, 속보를 5분, 10분을 편성해서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 자막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단 자막만 내면 될 일을 굳이 저희가 특보를 편성할 이유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전국방송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경남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날 이 건의 경우에는 11개 지역이 언급되었는데 11개 지역이 다 충청도지역이고, 저희가 걸린 것은 경남 남해 관련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서 오늘 저희 부산에서는 52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중앙재난본부에서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정말 중요한 재난이기 때문에 특보를 하루 종일 편성하고 특보, 속보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예를 들어 '서울·경기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여전히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고 문자가 왔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저희가 특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발생한 자막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소연을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 **홍성준 (주)연합뉴스TV 편성팀장**

-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편성팀장입니다. 먼저 미실시 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조 근무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방송과 방송운행 담당인데 당시 왼쪽에는 재난방송 클라이언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방송운행 APC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상황에서 먼저 도착한 489번 통보문은 원래대로 반영을 잘했고, 공교롭게 17초 뒤에 도착한 490번 통보문에 대해서는 MD가 주조에서 부조로 방송운행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른쪽 모니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왼쪽에 도착한 것을 보고 시간을 확인했는데 시간이 17초 차이이다 보니까 18시 4분으로 동일하게 찍혀 있으니 근무자 입장에서는 ‘아, 같은 자막이구나’라고 착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연합뉴스TV 같은 경우 보도채널로서 재난 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특보편성도 하고 있고, 비상단에 관련된 정보도 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L바(Bar)’ 자막을 통해 재난 상황 시 행동요령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당시에도 17시 30분부터 특보편성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 9월 28일부터 기상과 단신 리포트를 통해 태풍 미탁(MITAG) 관련 정보는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3일 동안 19시간가량, 10월 2일 17시 30분부터 10월 3일 13시경까지 19시간 정도 관련 특보를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 상황을 받고 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했고, 주조 근무자가 동일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조 근무자까지 충원을 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쪽의 노력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 **전영재 춘천문화방송(주) 뉴미디어 팀장**

- 춘천MBC의 전영재입니다. 작년 8월 2일 오후 1시 11분에 저희가 로컬방송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폭염경보가 왔었는데, 송출실과 기본적으로 뉴스센터하고 해서 로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송출실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방송 시스템보다도 저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조 근무자들에게 제가 전달하는데 희한하게 8월 2일은 1시 11분에 문자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통위 주무관과 확인했을 때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은 송출실 근무자와 뉴스센터 근무자가 MD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12시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로 발령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 달라는 이야기를 12시 라디오 뉴스에서 톱기사로 로컬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재난 폭염경보를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재난방송 온 것을 자막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클라이언트사에서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에 대해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온라인시스템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개 로컬 같은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 8월 2일 발생한 것을 가지고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막처리를 못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뉴스 로컬이 없기 때문에 릴레이를 받으면서 날씨에 관한 정보인 폭염경보에 대한 것들이 방송됐고, 2시 <뉴스 외전>에는 또 서울 것을 릴레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재난 방송에 대해 밤이고 낮이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방송 책임자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출실의 근무자에게 연락해서 방송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은 문자가 오지 않았는데 8월 3일은 또 폭염경보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날 만약 문자만 보내주셨으면 저희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12시 라디오 뉴스도 다 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정황적인 부분들을 참작해 주셔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 임종열 (주)와이티엔라디오 센터장

- YTN라디오입니다. 본 건으로 이 자리에서 뵈게 된 것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YTN라디오는 지상파 보도전문 편성채널입니다. 그동안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지난해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일부 재난정보를 제때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도 적은 인원, 부족한 장비로 운영하면서 분명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미실시 건 발생 이후에는 더욱 철저히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 라디오 주조정실에 문자수신전용 핸드폰을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1대에서 여러 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동시에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기술팀에서 문제가 되었던 프로그램 작동 이상 유·무를 매시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송 통신위원회의 그런 노력과 의지에 부합하지 못했던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YTN라디오는 뉴스전문채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 배승수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 사장

- 광주영어방송 사장 배승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광주영어방송에서는 올해 들어서 900여건의 재난방송을 성실히 송출해 왔고 앞으로도 잘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재난방송은 작년 10월 2일 태풍경보로 바뀌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재난방송을 하면서 22개 시·군, 또 바다 지역 31개 지역을 전부 방송하지 않고 광주, 목포, 나주, 여수, 진도, 화순, 흑산도, 홍도 8개 지역을 언급하면서 '나머지 광주와 전남지역 대부분 지역에 발효가 됐다' 이렇게 방송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31개 지역을 다 읽다 보면 방송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일반 청취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명을 언급했고 다른 지역은 빼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적발되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방송사에 수신된 통보 문에는 라디오방송의 경우 '핵심 내용 위주로 방송 문안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별도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없었고, 당시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전체를 열거하는 것보다 청취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명을 하면 되겠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방통위에서는 그 핵심 내용에 대한 정의를 올해 3월에 보내줬습니다. 저희 방송은 작년 10월에 있었고, '핵심 내용 위주로 방송 문안 조정 가능하다'라는 그때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올 3월에 '지역명도 포함되니까 전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당시 저희가 받았을 때는 이미 전이었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 담당자들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광주와 부산 그리고 TBS영어방송 3사가 모여서 외국어방송협의회를 출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재난방송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TBS교통방송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8년에 서울영어방송이 저희와 비슷한 사항이 과태료 대상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지역명 일부 누락, 인식 가능한 범위 지역 포괄의 경우에는 그 위반 수준이 미미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저희에게 귀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라디오만 하는 소규모 지역방송에서는 직원 수도 적은데다가 24시간 대기하면서 재난방송을 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사흘 동안 83건의 재난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다가 계속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흘 동안 83건이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취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지금처럼 잘해 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해 온 만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과태료 문제를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이 건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KNN과 광주영어방송뿐만 아니라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광주영어방송재단도 일부 지역을 빠뜨리고, 표현상 '전라도 일부 지역' 이런 식으로 방송했다고 문제가 됐습니다. 고시에 보면 '빠짐없이 모두 방송해야 한다' 이런 규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배승수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 사장

-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지역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저희에게 왔던 통지 문에는 '라디오방송의 경우 핵심 내용 위주로 방송 문안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재난방송 준칙 제4조에 보면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 일부 조정 방송할 수 있다" 해 놓고 제4호와 제5호에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이나 경보, 발령 기관 이런 것들은 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 2, 3호에 해당되는 발표시간이나 명칭, 발생지역 모두를 빠짐없이 방송하라는 것이 너무 과도한 요구가 되지 않는가, 실제 방송을 제작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친 규정으로 방송청취권을 방해할 정도의 강력한 조항이 아닌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KNN도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해당 외 지역까지 그것을 또 빠짐없이 하라는 것이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해당 지역방송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 하기 때문에 재량권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어쩌면 지금 참가하신 분들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문제가 된다면 추후 논의해서 얼마든지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 혹시 제 이야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추종탁 (주)KNN 보도국 편집부장

-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특히 태풍 부는 날 보면 무슨 현상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 태풍이 올 때 집중적으로 100건 정도 들어 옵니다. 99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경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좋습니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부산에서 지하 차도에 물이 갑자기 차서 사람이 죽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에서 100여건 내려오는 타지역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 부산시청이나 우리 지역의 긴급한 상황들을 대단히 죄송하지만 처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4~5시간, 8시간, 10시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서울에서 100건씩, 80건씩 내려옵니다. 아까 490번은 연합뉴스도 걸렸는데 이것이 17초 만에 비슷한 건이 2건이고, 실제로는 10 몇 분 사이에 4~5건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차라리 부산·경남,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난을 자막으로 내고 방송을 해야지, 경기도 어디에 홍수주의보가 해제됐다는 것도 저희가 내야 하고 강원 도에 뭐가 해제된 것을 솔직히 부산·경남 주민들이 아는 것이 과연 재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되고 더욱 역량이 되어서 최대한 서울도 다 내고 강원도도 내고 부산·경남 다 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승수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 사장

-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TV는 자막으로 처리하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라디오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자체를 끊고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방송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다른 라디오방송을 보면 온통 관심이 재난방송뿐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인지, 재난방송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라디오방송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규정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과연 그것이 더 현실적일까? 청취자들이 그것을 과연 듣고 행동하는데 효과적인 면과 방송 프로그램 전체가 손상되는 면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한번 토론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연합뉴스TV, YTN라디오, 광주영어방송 중 연합뉴스TV, 광주영어방송은 지난 '17년 9월에, 그다음에 YTN라디오는 '18년 6월에 재난방송 미실시로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배승수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 사장**

- 예, 한 번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지금처럼 방송 경영이 어려워서 500만원에서 750만원 과태료를 낸 것 자체가 큰 부담인데 물론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행법상 또는 시행령상 지켜야 할 준칙입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과태료를 물게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현재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또 한 차례 지적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더라도 현재 개선되기 전 단계에서는 재난방송에 자막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준용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KNN 측에 한 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위반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 **추종탁 (주)KNN 보도국 편집부장**

- 세부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건대 남해, 하동, 통영, 사천 이쪽에 강풍정보 발표된 것을 미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타지역 일입니까?

○ 추종탁 (주)KNN 보도국 편집부장

-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다음에도 경남 중부 남해 앞바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위반사례에 대해 항변을 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종탁 (주)KNN 보도국 편집부장

- 아닙니다. 첫 번째 건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특보와 속보를 했는데 자막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방송 클라이언트에 보면 특보를 해도 되고 속보를 해도 되고 자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강력한 특보를 선택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자막을 내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은 사무처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윤웅현 재난방송관리팀장

-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막보다는 특보나 속보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가 큰데, 이 문제는 잘하긴 하셨는데 우리가 재난방송을 통보한 것 중에 지역이나 명칭이나 발효시간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이 속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종탁 (주)KNN 보도국 편집부장

-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방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로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보를 하면 '태풍이 이렇게 오니 부산·경남에 이런 피해가 예상되고 강풍과 비 피해가 있으니 부산·경남 주민들 조심하십시오'라는 특보 내용을 재난방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월 몇 시에 풍랑주의보가 충남, 사천, 보령 등 이것을 안 썼다고 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자막에서 저희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경남남해앞바다에 뭐가 났다' 이 이야기인데 이미 그것은 특보상에서 저희가 10분에 걸쳐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구만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실 관계 확인은 추후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기본적으로 재난방송 의무화를 한 것은 특히 사업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면서 부관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다투어 봐야 할 문제지만 다른 문제는 법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더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지막으로하실 말씀 다 하시고 두 분은 한마디씩 더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세 분은 더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 전영재 춘천문화방송(주) 뉴미디어 팀장

- 죄송합니다. 어떻든 주신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옛말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그날 재난방송 책임자인 저에게 문자도 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로컬방송을 하다 보니까 송출실에서 재난방송, 거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도 다시 시키고 보강을 했습니다. 일단 관대하게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피심인 측 의견진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송 법규위반 행정처분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퇴장)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이 건 시정조치안과 관련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현 재난방송관리팀장

- 시정조치(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주)KNN, (재)원음방송, (주)연합뉴스TV, (주)와이티엔라디오, 춘천문화방송(주), (재)CBS, (재)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미실시 건과 중요정보 누락 건에 대해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국제방송교류재단은 단순실수이며 청취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무처에서 제시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다시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다면 보류해도 되는데 관련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오늘 현장에서 재난방송을 실시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보고서에서 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저는 재난방송의 도입 취지,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하고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방송에서는 그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과태료가 과하고 선택의 지점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해야 할 유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성을 갖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현재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등급화하는 방법을 사무처에서 고민해서 방안을 만드는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오늘 저희가 결정해야 할 2019년 3·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처리가 안 되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송사의 그런 목적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원안이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위원장님, 아까 의견진술 과정에서 팩트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들으시고 논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윤용현 재난방송관리팀장

- 아까 KNN에서 재난지역을 다른 지역도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진 같은 경우 전체 지역을 다 하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재난 같은 경우에는 방송구역에 해당되는 지역만 방송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KNN의 케이스를 보니까 2건인데 2건 가운데 '19년 9월 7일 건은 KNN이 인정하는 바이고, '19년 10월 2일 건에 대해 그때 태풍이 오고 있어서 KNN은 태풍 특보를 편성해서 보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온 문자 내용 가운데 일부가 상당 부분 경남 지역이 아닌 곳에 관한 재난문자였다, 그것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그것이 과연 그 문자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맞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윤용현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그 문자 가운데 KNN 커버리지와 관련된 문자는 딱 한 문장이었고 그 문장을 문자로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특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방송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리 있게 들렸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 영어방송의 경우, 가령 TV방송은 문자로 밑에 자막이 흐르게 하면 되지만 라디오방송은 방송을 중단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다, 그것을 참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제가 듣기에는 재난방송이 그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하지만 약간은 일리가 있다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재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제가 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 오해는 없지요?

○ 윤용현 재난방송관리팀장

- 말씀하신 대로 재난 특보나 속보 형식으로 했을 경우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이유는 일종의 경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물론 앞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두 번째 건은 경남중부남해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온다면 그 앞바다에 있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 김효재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 KNN 쪽의 주장은 문자 자막 한 줄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인 특보를 편성했는데 자막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용현 재난방송관리팀장

- 만약 구체적으로 시간과 지역을 특보에서 언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저희 법상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면제부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과태료 처분 과정에서 경감의 요소는 될 것 같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광주영어방송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을 다 언급하도록 우리가 고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뜨린 경우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개정하면서 방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 언급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앞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규정은 어쨌든 다 언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태풍주의보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몇 시에 발효되고 등급이 어느 정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 여쭙

봤던 것이 “지금 재난방송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위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이것을 여쭙봤던 것도 그것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발언의 취지를 봤을 때 재난방송에서 요구되고 있는 태풍주의보의 수준과 시각과 명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영어방송도 저도 고민해 봤는데 나중에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는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매체 특성상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충청남도지역의 어느 지역인데 명칭은 빠지고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충남 일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라디오방송을 수신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마련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법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처분해 왔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논의되는 부분은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은데 일단 사무처에서 7개 방송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추후 기준 마련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3가지 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역방송사를 방문하면서 이런 재난방송에 대한 그들의 고민과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정도 앞으로 전문가들과 우리 실무자들이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내용입니다. 고시 내용 중에 보면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정말 매체의 특성이나 재난의 성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빠짐없이 방송하라, 이 고시 내용은 너무 강력해서 실제 방송 제작진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에게는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에 한정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예외로 인정되고 재난 발생지역 등은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모든 지역을 하나 하나 모두 열거하게 되면 라디오 같은 경우 오히려 청취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론을 조금 경청해서 신속하게 고시 개정예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난방송 시행령 개정안도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재난방송 실시와 미실시로만 나누어져 있는데 실시와 미실시를 좀 더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어떤지, 실시와 미실시에서 실시는 했지만 불충분한 것도 포함시켜서 보다 정교하게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의 특성에 따라서 방송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재량권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재난은 전국적으로 포괄하는가 하면 호우주의보나 태풍 같은 재난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재난방송 위반으로 주로 지역방송사, 소규모 방송사들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탓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규제기관의 행정처분이 보다 엄밀하면서도 해당 방송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저는 행정의 수용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서 재난방송을 강조해서 각 방송사들이 아주 철저히 재난방송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각 방송사들이 충분히 재난

방송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팀의 공이 컸다고 저도 믿습니다. 다만, 이제 재난방송 시행령이나 고시가 좀 더 정교해지고 방송사의 자율권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좀 더 신속하게 제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창룡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잘 말씀해 주고, 저는 오늘 각 방송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련 고시 또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영어방송의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17개 군, 5개 시 그리고 관련 바다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솔직히 오히려 헛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관련 고시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파는 사회적 자원입니다.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재난방송에서도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계속 과태료 처분을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주된 의견이 원안 동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라디오방송국(FM) 변경허가에 관한 건 (2020-55-251)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라디오방송국(FM) 변경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방송(FM) 변경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재)국악방송의 국악광주FM방송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변경허가를 의결한다. 변경허가 조건은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국악방송의 국악광주FM방송국 변경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현황은 연주소 주소를 현재 광주광역시 남부 광주방송 구 사옥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로 옮기는 것이며, 송신소 주소를 역시 광주방송국 구 사옥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FM 99.3MHz로 동일합니다. 희망 방송구역은 현재 광주광역시

일원과 나주시, 담양군 일부를 광주광역시, 나주시 일원과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일부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송신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지난 9월 11일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29일 연주소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설치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 광주광역시·나주시를 방송구역으로 운용하는데 적합하며, 다만 희망 방송구역의 경우, 화순지역은 방송면적률 기준에 미달하고, 담양 및 영암지역은 타방송으로부터의 혼신이 예상되므로 화순·담양·영암지역 모두 방송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변경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국악광주FM방송국은 KBC 광주방송 사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KBC 사옥 이전으로 구사옥을 철거할 예정임에 따라 송신소 및 연주소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신소 이전 및 이에 따른 방송구역 변경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를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다만, 희망 방송구역인 화순·담양·영암지역은 혼신 예상 등에 따라 방송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악광주FM방송국 변경허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 조건은 주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0월 중으로 허가증을 교부하겠습니다. <붙임>으로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결과, (재)국악방송 방송국 운영현황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시를 통한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고시의 적용범위 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행위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시 제2조는 행위 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잡 다변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행위 사업 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기보다는 시행령 조항과 같이 사업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고시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고시 제명의 변경 또한 필요하기에 고시 제명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간'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 구체화·명확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는 원칙규정과 충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개념 또한 모호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행 예외사유와 개정내용을 대비한 <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는 모두 6가지인데 이 중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는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하고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는 거래관행 자체가 부당한 경우는 예외로 고려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는 실질적인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 큰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전체적인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즉 이익과 침해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는 통신장애 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장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이 광범위하므로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로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고시는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임의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즉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후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에 고시개정 의결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동 고시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의 고시개정안은 최근 페이스북 사태와 관련해서 법정 다툼에서 우리가 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입법 미비로 인해 시장의 규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30% 그런 것들 또한 입법 미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를 빨리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차별금지조항 같은 것들을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년 제정 당시 포털이나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는데 논란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또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시행 이후 지금까지 사무처에서 적용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불식시키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전체 이용자의 편의 및 후생증대 효과와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비교하고, 통신장애 대응 등 서비스 안정성을 구체화하는 등을 통해 현행 고시보다 명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다소 막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개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예시적으로 고시에 포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등 유관 부서와 협의가 됐는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그리고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점도 보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기를 바랍니다.

○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근 정부나 우리 사회의 이런 움직임을 둘러싸고 무역 마찰의

걱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과기정통부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이런 법안 개정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는 과기정통부와 미국의 카운트파트 간 정책협의를 한 달여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전 미팅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미국 쪽 파트너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과 이 고시 개정 문제가 다른 부분과 엇갈리는 것은 없는지,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이 금지행위라고 정해 놓았는데 적용 예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금지행위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측면에서 보면 규제 강화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계부처 협의를 철저히 진행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겠지요.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통상 문제도 각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7분 폐회 】